한편 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, 바로 2019. 9. 30.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, 이 사건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(소갑 제3호증 나의 사건검색 참조).

## 나. 증여해제소송의 소송수행의 필요성

현재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인 사건본인의 자녀들은, ① 사건본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명신이 증여해제를 통하여 부동산을 침탈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의사무능력을 이용하여 제기한 것이며, ② 10여 년간 전명신이 사건본인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전명신 외 다른 자녀들은 사건본인을 일절 만날 수 없었고, ③ 과거 사건본인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하는 등 학대한 바 있는 전명신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건강이 심히 염려된다는 입장입니다. 이와 같이 사건본인의 자녀들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견이 극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2019. 10. 16. 전명신은 갑자기 청구인 사무실로 찾아와 다짜고짜 한 정후견개시는 법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, 청구인은 당장 당사자표시정 정신청을 철회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. 전명신은 현재까지 청구인의 후견사무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건본인의 거소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,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시급하게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므로,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준비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